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3
----------	------

2020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 8. 12.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0. 8. 21.

4. 상정일자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0. 9. 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초 의결했던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1743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코로나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 타 시도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음
- 이에 따라 당초계획 63억 3천 1백만 원에서 6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한 69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743호, **2020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 제안이유

- 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0년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30억 7,300만원에서 37억원으로 6억 2,700만원 증가하였음.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31억 3,600만원에서 37억 6,300만원으로 6억 2,700만원 증가하여 20% 초과 변경되었고,

다. 이후 코로나 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원을 위한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신규 추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증액 등으로 조정하여 최종 「재무활동」 금액은 32억 400만원임.

-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1억 100만원 신규편성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 5억원 증액 (10억원 → 15억원)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200만원 감액 (3억원 → 2억 5,800만원)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1차~3차 (B)	4차변경 (C)	5차변경 (D)	6차변경 (E)	증 감 (E-A)
수입합계	6,331	6,331	6,958	6,958	6,958	627
일반회계 전입금	3,200	3,200	3,200	3,200	3,200	-
이자수입	58	58	58	58	58	-
예치금수	3,073	3,073	3,700	3,700	3,700	627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1차~3차 (B)	4차변경 (C)	5차변경 (D)	6차변경 (E)	증 감 (E-A)
지출합계	6,331	6,331	6,958	6,958	6,958	627
비용자성 사업비	3,192	3,192	3,192	3,251	3,751	559
기본경비	3	3	3	3	3	-
재무활동	3,136	3,136	3,763	3,704	3,204	68

※ 1차~3차 변경 : 예산과목만 변경(자치단체간부담금→민간경상보조금)하여 예산액 변경 사항 없음

※ 5차 변경 :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 사업 5,900만원 신규 편성

※ 6차 변경 :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관련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5억원 증액,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200만원,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 4,200만원

3.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6억 2,700만원)와 지출계획중 예치금(6억 2,700만원)에 기반영하고, 예치금중 일부를 감액하여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중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을 증·감 조정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지출계획중 예치금이 당초보다 20%, 6억 2,700만원 증가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계정은 지난 3월, 기금운용부서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6억 2,700만원)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결산결과에 따른 여유재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결산결과를 반영하고자 지출계획중 예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부서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지난 '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바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이라도 재무활동의 20% 이상에 해당되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 기금운용부서가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비용자성 사업의 경우,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6억 2,700만원)을 지출계획에 계상한 이후 다른 정책사업(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중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를 신규 지출계획하고,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는 증액하여 지출계획 한 바,

-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중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는 지난 5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무활동(예치금)중 △5,9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치금만큼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의 당초 지출계획 보다 5,900만원을 증액하여 신규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무활동(예치금)중 △5억원을 감액하여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에 5억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감액된 예치금만큼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의 당초 지출계획은 5억원이 증액되어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에 5,900만원이 순증되고,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에 5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은 당초지출계획(31억 9,200만원)보다 17.5%, 5억 5,900만원 증가된 37억 5,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중 증액된 지출계획의 내용은 대외협력 기금 국내계정의 고유목적 사업인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지출

로 사료됨

- 다만, 정책사업(**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출금액 변동비율이 당초보다 17.5% 증가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이 정하는 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 계정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은 ①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②재무활동, ③행정운영경비로 확인되나 제출된 안건에 기재된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 기본경비, 재무활동”으로 임의 기재하고 있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2020. 9. 10.)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743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0년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었음.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3,073백만원에서 3,700백만원으로 627백만원 증가하였음.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3,136백만원에서 3,763백만원으로 627백만원 증가하여 20% 초과 변경되었고,

다. 이후 코로나 19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원을 위한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신규 추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증액 등으로 조정하여 최종 「재무활동」 금액은 3,204백만원임.

- 농촌일손교류 프로젝트 101백만원 신규편성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 500백만원 증액(1,000백만원 → 1,500백만원)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2백만원 감액(300백만원 → 258백만원)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구분	당초계획(A)	1차~3차(B)	4차변경(C)	5차변경(D)	6차변경(E)	증감(E-A)
수입합계	6,331	6,331	6,958	6,958	6,958	627
일반회계 전입금	3,200	3,200	3,200	3,200	3,200	-
이자수입	58	58	58	58	58	-
예치금수회	3,073	3,073	3,700	3,700	3,700	627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A)	1차~3차(B)	4차변경(C)	5차변경(D)	6차변경(E)	증감(E-A)
지출합계	6,331	6,331	6,958	6,958	6,958	627
비용자성 사업비	3,192	3,192	3,192	3,251	3,751	559
기본경비	3	3	3	3	3	-
재무활동	3,136	3,136	3,763	3,704	3,204	68

※ 1차~3차 변경 : 예산과목만 변경(자치단체간부담금→민간경상보조금)하여 예산액 변경 사항 없음

※ 5차 변경 : '농촌 일손 교류 프로젝트' 시범사업 59백만원 신규 편성

※ 6차 변경(예정) :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관련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500백만원 증액,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42백만원, '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 +42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협력상생담당관 대외협력팀 김현태(☎ 2133-6655)